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14
----------	-----

2012년 6월 21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 6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복지건강실장 김경호)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짧아 중장기계획하에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사회복지사들의 건의가 있었고, 재위탁을 위한 각종 평가 및 심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없애고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연장하고,
-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법을 적용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 사회복지시설의 성격과 법정용어에 맞도록 명칭 및 주요기능을 변경하고, 시설별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임.

3.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김태호)

가. 조례안 요지

-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위탁기간 연장(3년에서 5년으로)에 대한 법적·정책적 검토

-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간의 5년으로의 연장은 현행 ‘3년 이내’로 규정된 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1)의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 ①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규정에 맞게 '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²⁾해왔던 사안이기도 함.

-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특성상 현행의 3년 위탁기간은 전문적인 서비스의 역량을 축적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3년 단위의 위탁복지시설 변경에 따른 근무자의 고용불안 문제 등이 야기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결국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 종사자의 고용안정, 전문기술을 축적을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임³⁾.

- 이에 반해 현행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제11조제2항)한 것은, 위탁기간이 단기간일 경우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고, 위탁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시 소유 시설에 대한 특혜·사유화 논란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

2) <최근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논의 동향>

-서울시 주관, '사회복지사 정책워크숍' (2011. 12. 5)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 2011 서울복지포럼 개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2011.11.24), -국회의원 주승용 주관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체제의 문제점과 대안모색"(2011. 8. 9),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1. 1.2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TFT 상시 운영 (참여단체: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시민연대)

3) 민간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갖게 되는 또 다른 의미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임기와 관련하여 불 때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적 정치적 외압을 덜 받을 수 있는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임.

-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104조4), 관할 사무 중 어떤 사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운영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나 규칙을 통해 구체화 할 수 있음. 따라서 민간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할 것인지, 5년 이내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임.

- 서울시의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규율은 총괄적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별도의 개별 조례를 따르고 있긴 하나, 민간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동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것임.

4)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령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설명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한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상위법령에서의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3년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애초 법적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다시말해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이라는 사무의 특성으로 보면,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그 성과를 얻어내는 일련의 과정은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지역사회사업 환경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더욱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처럼 개별 상위법령에서 민간위탁 계약기간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의 행정 관행을 이유로 상위법령을 따른 기간을 축소 규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이미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5년 이내로 연장한다하더라도 법 체계상 문제가 되지 않음.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에 두고, 이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사무의 특성상 위탁기간의 연장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본 조례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수용 가능하다고 봄.
- 다만, 민간위탁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부실운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 어려움 및 이로 인한 복지서비스의 비효율성, 경쟁력 약화, 사유화 논란 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평가, 지도점검, 감사 등의 다양한 장치를 통해 면밀한 보안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다. 사회복지시설 현행화에 대한 검토

-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도로명주소법」 개정(’11. 8. 4)에 따른 시설별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려는 것임.
- 이에 현행 [별표] 의 시설 및 주요기능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별표] 신·구 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시설명	주요기능	시설명	주요기능
여울쉼터	성매매 피해 여성 수용보호	여울여성희망센터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여성보호센터	부랑인(여) 수용보호	시립여성보호센터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은평의 마을	부랑인(남) 보호	시립은평의 마을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양평쉼터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양평쉼터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여울쉼터’의 경우 현재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기능을 포괄하고 있고, 현행 “수용보호”라는 기능은 어감상 낙인감을 줄 수 있는바, 법정 용어에 맞게 시설명과 주요기능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여 짐.
- 이하 ‘시립여성보호센터’를 포함한 3곳의 노숙인 관련 시설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정 용어로 순화하고 자립지원과 관련된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이에 따른 변경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 됨.
- 마지막으로, 조례 별표에 명시된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위치를 기존 지번방식의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14
----------	-----

제출년월일 : 2012년 6월 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안 제6조제3항)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성격과 법정용어에 맞도록 명칭 및 주요기능을 변경하고, 시설별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함(안 별표)
 - 명칭변경 : 여울쉼터 ⇒ 여울여성희망센터
 - 주요기능 변경
 - 부랑인(여) 수용보호, 부랑인(남) 보호,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성매매 피해여성 수용보호 ⇒ 성매매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미첨부사유서 별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2. 5.10 ~ 2012. 5.30)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시립영보자애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
	◦ 다시함께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여울여성희망센터	비공개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너른쉼터	비공개	"
	◦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시흥동)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산대책담당관)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3층 (구로동)	한부모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대안학교 운영 등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답십로69길 106 (장안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목로 5 (신정동)	주민복지 프로그램운영
복지건강실 (노인복지과)	◦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고덕동)	저소득 노인보호
	◦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일로 250길 44-142 (상계동)	"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 23길 12 (홍익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 요양보호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성산동)	"
	◦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35 (삼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저소득 노인 요양보호
	◦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산본동)	"
	◦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섭발로 313 (중계동)	"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복지건강실 (노인복지과)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수유동)	"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	"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	"
	◦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	"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	"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	"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 (청량리동)	"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	"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외동)	"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겹재로9길 45 (면목동)	"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	◦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
	◦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동)	"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 시립곰두리체육센터 ◦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시립평화로운집 ◦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센터 ◦ 시립중랑장애인단기보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송파구 오금로 363 (오금동)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남가좌동)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홍은동) 중랑구 겸재로61길 81 (망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적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농아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생산품판매 중증장애인 보호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은평의마을 ◦ 양평쉼터 ◦ 게스트하우스 ◦ 비전트레이닝센터 ◦ 영등포보현의집 ◦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 브릿지 상담보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구산동, 은평마을)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성동구 가람길 125 (송정동)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용답동)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영등포동2가)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갈월동)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 " "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영보정신요양원 ◦ 시립은혜로운집 ◦ 누리봄 ◦ 새오름터 ◦ 늘푸른집 ◦ 동작아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광진구 용마산로 25길 10 (중곡동) 은평구 연서로 22길 4 (대조동) 도봉구 시루봉로 295-3 (도봉동) 동작구 국사봉길 109 (상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 보호 "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 "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서행동장애아동 치료시설)

현행				개정안			
[별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제3조관련)				[별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제3조관련)			
주관국(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주관국(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여성가족정책실(여성정책담당관)	◦ 시립여성보호센터	<u>강남구 수서동 산4-1</u>	<u>부랑인(여) 수용보호</u>	여성가족정책실(여성정책담당관)	◦ 시립여성보호센터	<u>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u>	<u>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u>
	◦ 시립영보자애원	<u>경기 용인 이동목리 464</u>	"		◦ 시립영보자애원	<u>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u>	"
	◦ 다시함께센터	<u>동작구 대방동 345-1</u>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다시함께센터	<u>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u>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u>여울쉼터</u>	비공개	<u>성매매 피해 여성수용 보호</u>		◦ <u>여울여성희망센터</u>	비공개	<u>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u>
	◦ 너른쉼터	비공개	"		◦ 너른쉼터	비공개	"
	◦ 서울이주여성 디딤터	<u>금천구 시흥4동 산139-2</u>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 서울이주여성 디딤터	<u>금천구 독산로50길 23 (시흥동)</u>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등	◦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등		
여성가족정책실(자출산대책담당관)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u>구로구 구로4동 98-5번지 2,3층</u>	한부모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대안학교 운영 등	여성가족정책실(자출산대책담당관)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u>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3층 (구로동)</u>	한부모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대안학교 운영 등
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u>동대문구 장안동 329-1</u>	보호대상아동 상담·치료·보호	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u>동대문구 답십로69길 106 (장안동)</u>	보호대상아동 상담·치료·보호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u>은평구 응암동 42-5</u>	보호대상아동 양육 및 보호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u>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u>	보호대상아동 양육 및 보호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u>양천구 신정동 1278-1</u>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u>양천구 신목로 5 (신정동)</u>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현행				개정안			
주관국(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주관국(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복지 건강실 (노인 복지과)	◦ 시립고덕양로원	<u>강동구 고덕동 317-23</u>	저소득노인보호	복지 건강실 (노인 복지과)	◦ 시립고덕양로원	<u>강동구 고덕로 199 (고덕동)</u>	저소득노인보호
	◦ 시립수락양로원	<u>노원구 상계동 산 51</u>	"		◦ 시립수락양로원	<u>노원구 동일로 250길 44-142 (상계동)</u>	"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u>성동구 홍익동 16</u>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 요양 보호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u>성동구 마장로 23길 12 (홍익동)</u>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 요양 보호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u>마포구 성산동 373-1</u>	"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u>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성산동)</u>	"
	◦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u>송파구 삼전동 172</u>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저소득 노인 요양 보호		◦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u>송파구 백계교분로 32길 35 (삼전동)</u>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저소득 노인 요양 보호
	◦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u>경기 군포 산본동 1100</u>	"		◦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u>경기도 군포시 교산로 589 (산본동)</u>	"
	◦ 시립영보노인요양원	<u>경기 용인 이동 목리 464</u>	"		◦ 시립영보노인요양원	<u>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u>	"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u>노원구 중계동 501-1</u>	"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u>노원구 섬밭로 313 (중계동)</u>	"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u>중랑구 망우동 235-1</u>	"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u>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u>	"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u>강동구 명일동 48-10</u>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u>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u>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u>강북구 수유동 122-3</u>	"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u>강북구 삼양로92길 40 (수유동)</u>	"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u>강서구 등촌동 661-4</u>	"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u>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u>	"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u>관악구 봉천동 726-3</u>	"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u>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u>	"
	◦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u>광진구 군자동 364-16</u>	"		◦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u>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u>	"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u>구로구 구로동 25-1</u>	"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u>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u>	"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u>금천구 시흥동 558-1</u>	"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u>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u>	"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u>노원구 하계동 170-1</u>	"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u>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u>	"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u>도봉구 쌍문동 19-12</u>	"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u>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u>	"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u>동대문구 청량리동 11-1</u>	"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u>동대문구 계기로33길 25 (청량리동)</u>	"

현행				개정안			
주관국(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주관국(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복지건강실(노인복지과)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대방동 335-10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건강실(노인복지과)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창전동 140	"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	"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천연동 117-3	"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경운동 90-3외 1	"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장동 798-1	"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동 66-25	"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한남동 108-1	"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
복지건강실(장애인복지과)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진관외동 산 140	"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외동)	"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면목동 178-8	"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경재로9길 45 (면목동)	"	
	◦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95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건강실(장애인복지과)	◦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동 317-24	"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
	◦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79	"		◦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 비드나루로 22 (영등포동)	"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상이군경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상이군경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시각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시각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	
◦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오금동 51	장애인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오금로 363 (오금동)	장애인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95	지적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지적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남가좌동 270-1	농아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남가좌동)	농아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양천구 목동 908-33	장애인생산품 판매	◦ 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장애인생산품 판매		
◦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구산동 산61-8	중증장애인 보호	◦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중증장애인 보호		

현행				개정안			
주관국(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주관국(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복지건강실(장애인복지과)	◦ 시립홍은동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서대문구 홍은동 30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복지건강실(장애인복지과)	◦ 시립홍은동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시립마천동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송파구 마천동 28-1	“		◦ 시립마천동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
	◦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서대문구 홍은동 415-94	중증 여성 장애인일시보호		◦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서대문구 중가로4길 58-16 (홍은동)	중증 여성 장애인일시보호
	◦ 시립중랑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중랑구 망우동 479-123	“		◦ 시립중랑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중랑구 결재로61길 81 (망우동)	“
복지건강실(자활지원과)	◦ 시립은평의 마을	은평구 구산동 산61-8	부랑인(남)보호	복지건강실(자활지원과)	◦ 시립은평의 마을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구산동, 은평마을)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양평쉼터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347-1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 양평쉼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
	◦ 게스트하우스	성동구 송정동 73-5	“		◦ 게스트하우스	성동구 가람길 125 (송정동)	“
	◦ 비전트레이닝 센터	성동구 용답동 250-1	“		◦ 비전트레이닝 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용답동)	“
	◦ 영등포 보현의집	영등포구 영등포2가 94-31	“		◦ 영등포 보현의집	영등포구 비드나루로 24 (영등포동2가)	“
	◦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용산구 갈월동 14-30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갈월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복지건강실(보건정책과)	◦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용인 처인 이동 목리 464	정신질환자 보호	복지건강실(보건정책과)	◦ 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정신질환자 보호
	◦ 시립은혜로운집	은평구 구산동 산61-8	“		◦ 시립은혜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
	◦ 누리봄	광진구 중곡동 29-10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 누리봄	광진구 용마산로 25길 10 (중곡동)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 새오름터	은평구 대조동 220-1	“		◦ 새오름터	은평구 연서로 22길 4 (대조동)	“
	◦ 늘푸른집	도봉구 도봉1동 613-40	“		◦ 늘푸른집	도봉구 시루봉로 295-3 (도봉동)	“
	◦ 동작아이존	동작구 상도동 294-74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서행동 장애아동 치료시설)		◦ 동작아이존	동작구 국사봉길 109 (상도동)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서행동 장애아동 치료시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3년→5년)하는 내용과 시설의 명칭 및 기능, 소재지 등 현황 자료를 수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여지가 없는 사안임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시설법인팀 지방행정주사 이복현 (02-3707-9154)